

## WTO 반덤핑협정 상 비시장경제 규율에 대한 고찰: 미국의 단일률 적용 관행을 중심으로\*

김경화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

## Applicability of the Single Rate Presumption for Non-Market Econom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Kyoung-Hwa Kim<sup>a</sup>

<sup>a</sup>Center for Trade Studies and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South Korea

Received 31 July 2021, Revised 26 August 2021, Accepted 29 August 2021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WTO-inconsistent aspects of the single rate presumption of the United States in establishing and imposing anti-dumping duties for non-market economy exporters. By examining the drafting history in the GATT/WTO negotiations and the practice of the single rate presumption for non-market economies by the United Stat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it critically addresses the inherent lack of pertinent disciplines under the framework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establishing dumping margins for exporters of non-market economies.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leaves open the possibility of allowing the investigating authority to consider multiple exporters and the exporting country as a single entity. However, the study argues that it is difficult in practice for the investigating authority to make a single-entity decision in a WTO-consistent manner. The study also finds an incompatibility in the notion between establishing dumping margins for ‘individual’ exporters and ‘non-market economies.’ A proper discipline for non-market economies under the multilateral anti-dumping norm needs to be reconsidered in the era of persistent trade conflic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Keywords:** Non-Market Economy, Single Rate Presumption, NME-wide Entity, WTO Anti-Dumping Agreement

**JEL Classifications:** F10, F13

\*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paper are those of the author and should not be attributed to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ny errors are the fault of the author.

<sup>a</sup> First Author, E-mail: [kyounghwa.kim@kita.or.kr](mailto:kyounghwa.kim@kita.or.kr)

© 2021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 I. 서론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은 2001년 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 이후 수출과 투자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대두된 필연적 현상으로, 현재 다자통상규범 하에서는 풀기 힘든 난제이다. 미-중 통상 분쟁의 이면에는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심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경제체제의 상이성, 즉 시장원리보다는 국가 및 당 주도하에 운용되는 중국 경제체제와 이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 특유의 경제체제에 의해 발생하는 교역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무역구제제도의 상의 여러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중에서도 반덤핑 조사 시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간주하고 시장경제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덤핑관세를 산정, 부과하는 관행은 실질적으로 중국산 수입을 강력히 제재해 온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미국 상무부는 비시장경제 국가의 모든 수출자가 기본적으로 정부 단일체(single, government-wide entity)의 운영 단위이므로 범국가세율(NME-wide rate)<sup>1)</sup>을 부과 받아야 한다는 반증 가능한 전제(rebuttable presumption) 하에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 이 때문에 비시장경제국의 수출자가 단일률이 아닌 별도율(separate rate)을 부과받기 위해서는 일련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그 자신이 비시장경제 단일체와는 분리된 개체임을 입증하여야 한다.<sup>2)</sup> 수출자가 이러한 입증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비시장경제 단일률을 적용받는데, 이는 시장경제국의 수출자들이 원칙적으로 개별률을 적용받는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특히 비시장경제 단일체에 포함될 수출자들이 모두 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바, 단일률은

수출자의 비협조를 근거로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dverse facts available, AFA)에 의거한 고율로 결정되는 경우가 보편화되었다. 미국 국내법 상 비시장경제국인 중국과 베트남은 최근 10여 년간 WTO에 반덤핑 조사 시 비시장경제 단일률 부과 관행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의 관련법 자체와 그 적용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으나, 미국은 WTO 판정을 이행하거나 이행할 의사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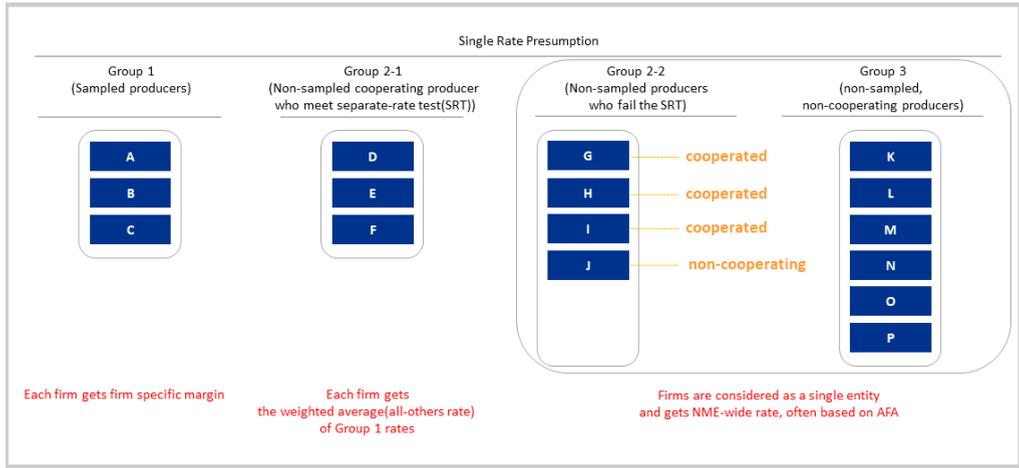
그동안 국제통상에서 비시장경제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Mark Wu (2016)는 중국만의 독특한 경제 구조 운용의 실태를 분석하고 다자통상체제 하에서의 규율을 모색한다. Horlick (1984), Grimmet (2012), Kim Seok-Min (2005) 그리고 Lee Ji-Eun (2016)은 미국의 반덤핑조사에서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조사 관행 발전을 분석하였으며, Kim Hye-Rim and Ahn Duk-Geun (2018)은 미국의 비시장경제국 반덤핑 조사 시 대체국가 선정 문제를 실증 분석한다. Yang(2000), Kong(2000) 그리고 Liang(2002)는 중국의 WTO 가입 당시 협상배경과 과정, WTO 가입의 함의를 검토하였고, Choi Song-Ja(2013)는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조기 취득을 위한 노력 및 그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며, O'Connor(2011), Ryu Ye-Ri (2016) 그리고 Zhou(2017)은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상 비시장경제 지위 효력 종료 여부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비시장경제 지위 적용시 미국의 반덤핑 조사 방법론 및 가입의정서 상 비시장경제 지위 종료에 관한 선행 연구와 연결되며, 반덤핑 조사에서 비시장경제로 구분될 경우 개별률이 아닌 단일률이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의 II장에서는 미국 반덤핑 조사시 단일률 적용 규범의 발전되어온 경과와 최근 10여 년간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단일률 적용 현황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GATT/WTO 반덤핑 규범 상 비시장경제 규정 발전을 살펴본다. IV장에서는 비시장경제 단일률 적용 쟁점을 다룬 WTO 판례를 분석하고, WTO 반덤핑 규범 하에서 비시장경제 단일률 가정 및 부과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법적, 경제학적 측면에서 검

1) 미국 반덤핑 조사 관정문에서 범국가세율은 수출국에 따라 China-wide rate, Vietnam-wide rate, 또는 NME-wide rate 등으로 표현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범국가세율 적용의 출발점이 되는 단일률 가정(single rate presumption) 표현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비시장경제 범국가세율(NME-wide rate) 또한 비시장경제 단일률로 표현하기로 한다.

2) USDOC, Anti-Dumping Manual, Chapter 10.

Fig. 1. Application of NME-wide Rate for Exporters in Establishing Dumping Margins



Source: McDaniel and Vermulst. (2020)

토한다. 마지막 V장에서는 다자통상규범 하에서 비시장경제 규율 개선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 II. 미국 반덤핑 조사 시 비시장경제 단일률 적용 규범의 발전과 현황

미국은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 조사대상물품 수출자들은 정부 단일체의 운영 단위이므로 단일의 반덤핑관세율을 부과 받아야 한다는 가정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비시장경제국 수출자가 별도의, 개별 덤핑 마진을 산정받기 위해서는 수출 활동에 대한 정부 통제가 법률상(de jure) 및 사실상(de facto) 부재하다는 점을 충분한 증거를 통해 소명하여야 한다. 별도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업체 이외의 모든 업체는 비시장경제 단일률을 적용받는다. 이들 중 일부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이는 곧 비시장경제 단일체에 속하는 전체 수출자가 비협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비시장경제 단일률은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상무부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가 많아 모든 업체를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조사대상업

체 수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때 의무답변자로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만이 전체 질의서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 의무 답변자들의 경우 답변자의 수출가격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덤핑률이 산정되며, 별도율 적용 대상이면서 의무 답변자로 선정되지 않은 수출자들은 일반적으로 의무답변자에 대해 산정된 개별 덤핑률의 가중 평균 값을 부여받는다. 미국의 비시장경제 반덤핑 조사 시 수출자 범주 별로 덤핑률 산정 방식을 도식화 하면 아래 Fig.1.과 같다.

현재와 같이 개별률, 별도율, 그리고 비시장경제 단일률로 구성되는 세 범주의 덤핑률 구조는 법규 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1990년 이후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실무적 관행으로 확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비시장경제국 수출자의 정상가치를 산정하는 방법론은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적용되어 온 반면, 수출자가 정부와 독립된 개체인지에 대한 법적, 사실적 판단 기준 및 절차는 1991년 중국산 스파클러(Sparkler) 반덤핑 조사에서 처음 도입되고, 이후 1994년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Silicon Carbide) 조사에서 확장 보완되었다.<sup>3)</sup> 비시장경제국 수출자들의 수

3) USDOC, Anti-Dumping Manual, Chapter 10.

출 활동이 정부 통제 하에 있지 않다는 법률상 (de jure) 증거로는 개별 수출자의 사업 및 수출 라이선스와 관련된 제한적 조항의 부재, 기업 지배의 분권화와 관련된 법률, 그 외 기업 지배 분권화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식적 조치 등이 있다. 상무부는 또한 수출자가 사실상 (de facto) 정부 통제를 받는지 평가하기 위해 네 개의 요소, 즉, 수출가격이 정부 당국에 의해 결정되는지, 수출자가 계약 내용을 직접 협상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지, 수출자가 경영자 인선 결정 시 자율성이 있는지, 그리고 수출자가 이익 처분 또는 손실 보전과 관련된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WTO 분쟁인 US - Antidumping Methodologies (China)에서도 중국은 상무부의 단일률 가정이 1991년 이후부터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sup>4)</sup> 반면 1991년 중국산 스파클러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을 살펴보면 상무부는 수출자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여부는 검토했지만 비시장경제 단일률을 별도로 계산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의무담변자의 개별 덤핑률 그리고 개별 덤핑률의 가중평균에 근거한 기타율(All-others)만을 산정하였다.<sup>5)</sup>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별도율’ 부과를 위한 상무부의 검토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달리 소명하지 않은 수출자들을 한데 묶어 ‘비시장경제 단일률(NME-wide rate)’을 산정 및 부과하는 관행은 적어도 1991년 이후에 확립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비시장경제에 관한 반덤핑 조사 기준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개편되기 이전, 미국에서는 덤핑마진 산정 목적 상 비시장경제국의 국내 판매가격의 공정 가치로서의 비교가능성에 주로 초점을 두고 정상가치 산정 방법론이 개발되어 왔으며, Choi Song-Ja(2013)은 이렇게 산정된 반덤핑관세율이 비시장경제국가의 모든 조사대상물품에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왔다고 설명한다.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비시장경제’ 용

어를 정의하기 전까지 미국은 ‘국가 통제경제 (state-controlled economy)’ 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1960년대 초 체코슬로바키아산 자전거 반덤핑 조사에서 수출국 내수가격을 정상가치의 기초로 삼았던 기존 방법론이 아닌, 비공산주의 국가에서 생산된 유사 물품의 내수 또는 수출가격을 정상 가치로 활용하는 방법론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시장경제 국가의 동종물품 내수 판매가격,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을 정상 가치로 사용하는 방법론은 이후 1973년 시행규칙 제153.5(b)조에 포함되었다가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을 통해 1921년 반덤핑법(Antidumping Act of 1921) 제205(c)조로 제정된다. Horlick(1984)는 이러한 ‘대체국가(surrogate country)’ 방식이 미국 이외에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는 다른 대체 국가가 없는 경우에 사용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당시 조사당국인 재무부(Treasury Department)는 노동시간, 전력, 원재료 투입량 등 수출자의 조사대상물품 생산에 소요된 실제 투입량을 인정하되 유사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시장경제 국가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생산요소(factors of production)’ 방법론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1978년 재무부는 시행규칙 제153.7조를 수정하여 통제경제 국가 수출자의 정상가치 산정 시 대체국의 동종물품 (1) 내수 판매가격, (2) 수출가격, (3) 내수 또는 수출 가격이 없는 경우 구성가격을 사용하되, 대체국에서 조사대상물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요소 방법론에 의거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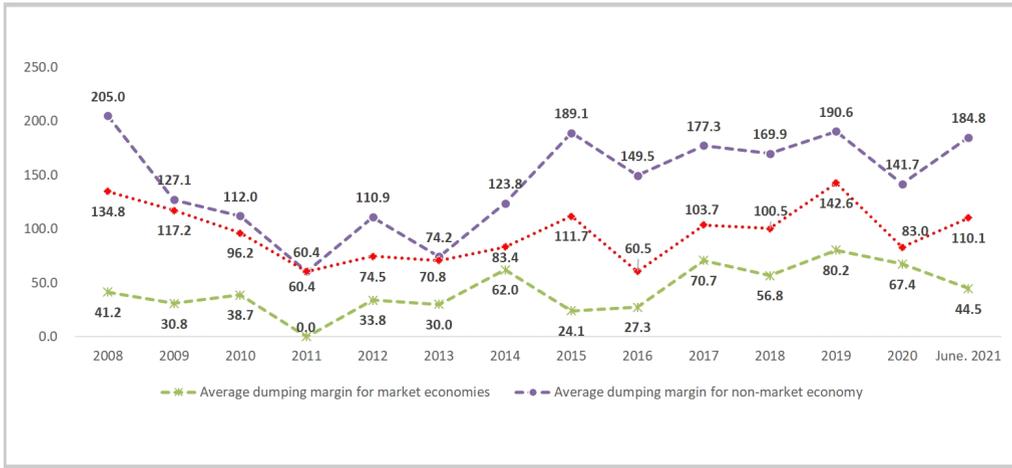
1980년대 구소련 지역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국내법 상 ‘비시장경제’ 정의를 보다 명확히 내릴 필요를 느끼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덤핑마진 산정 방법론을 정립한 것으로 이해된다. 1988년 종합무역법 제1316(b)조에 의하면 비시장경제는 그 정의상, ‘조사당국이 판단하기에 원가 및 가격결정구조가 시장원칙

4) Panel Report, US - Anti-Dumping Methodologies (China), para. 7.303.

5) Federal Register, Vol 56, No.87, 20592. May 6, 1991.

6) Antidumping Investigation Procedures Under Antidumping Act, 1921 43 FR 35262-25265 (1978).

Fig. 2. Average Dumping Margins by Year for ME/NME exporters (unit:%)



Note: The calculation of average dumping margins is based on final (or preliminary) determinations published by the USDOC's original investigations as of June 30, 2021.

Source: Compiled by author from US Federal Register

에 입각하여 결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제품의 판매가 공정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국가'를 의미한다. 수출국이 비시장경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조사당국은 통화 대환성, 임플 결정 시 노사교섭의 영향, 조인트 벤처 및 기타 유형의 해외직접투자의 허용 정도, 생산 수단에 대한 정부의 통제 및 소유권 정도, 기업의 자원 배분, 가격, 산출물 결정에 대한 정부의 통제 정도를 검토하며, 기타 조사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비시장경제국 여부를 결정한다.<sup>8)</sup> 조사대상물품이 비시장경제국의 수출품이고 가용정보에 의거할 때 상무부가 해당 조사대상물품의 공정가치를 시장경제 국가에 적용되는 정상가치 산정 방법론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합무역법은 생산요소 방법론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문화하였다.<sup>9)</sup>

상기 생산요소 방법론 적용 요건은 역으로 해석하여 볼 때, 특정 상황 하에서는 비시장경

제국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해 시장경제 하의 정상가치 산정 방법론 적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법규로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상무부는 1992년 중국산 Lug nuts 반덤핑조사에서 시장지향산업(Market Oriented Industry, MOI) 판단 기준을 처음 마련<sup>10)</sup>하고, 특정 산업이 이 기준을 통과할 경우 비시장경제 국가 내의 내수가격 또는 원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MOI로 판단되려면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수량 및 가격 책정에 있어 사실상 정부간섭이 없고 조사대상물품이 속한 산업은 사기업 성격으로 특징되어야 하며, 조사대상물품 전체 금액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모든 생산요소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현재 MOI 검토 기준은 법 또는 시행규칙 어디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실무적으로도 MOI가 인정된 예가 거의 없다.<sup>11)</sup>

미국에서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현재 총 11개 국가<sup>12)</sup>인데, 최근 10여 년간 반덤핑 조사는 2017년 벨라루스 1건을 제외하고는

7) Section 1316(b),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P.L. 100-418, 102 Stat. 1107 (1988) (19 U.S.C. 167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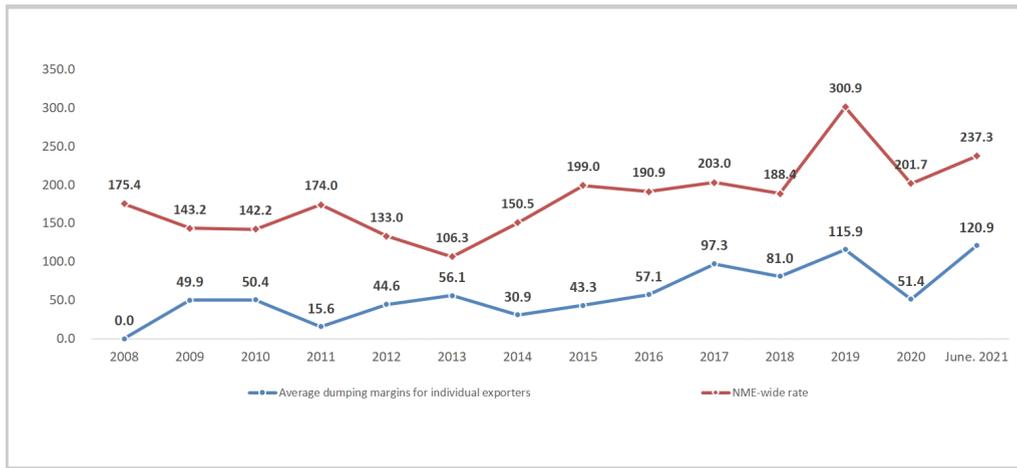
8) Ibid.

9) Section 1316(a), above n 7. (19 U.S.C. 1677(c))

10) USDOC, Anti-Dumping Manual, Chapter 10.

11) Ibid.

12) <https://www.trade.gov/nme-countries-list>

**Fig. 3. Average Dumping Margins by Year for Individual and NME-wide Entity**

Notes: 1. The calculation of average dumping margins is based on final (or preliminary) determinations published as of June 30, 2021 in USDOC's original investigations.  
 2. Average dumping margins for individuals excludes the dumping margins of those who are mandatory respondents but are assigned NME-wide rate.

Source: Compiled by author from US Federal Register

모두 중국과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다. Fig.2에 나온 바와 같이 미국의 비시장경제 수출국에 대한 평균 덤핑률은 시장경제 수출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21년 1월에서 6월까지 발표된 원심조사결과 기준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덤핑률은 평균 184.8%로 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평균 덤핑률 44.5%보다 4배 이상 높으며, 2015년 이후 200%에 가까운 고율의 덤핑률이 산정되는 추세이다.

비시장경제국가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서 산출된 덤핑률이 시장경제국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비시장경제 단일률의 영향이 크다. Fig.3.은 최근 10여 년 간 비시장경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 시 개별적으로 조사받은 업체의 덤핑률 평균과 비시장경제 단일률 간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의무답변자에 대해 산정한 개별 덤핑마진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 4-5년간 평균 50%~120%에 이르는 고율이 산정되었는데, 비시장경제 단일률은 동일 기간 180%~300%로서 '생산요소' 방법론이 사용되는 개별 마진 수준보다 수출자에게 더욱 가중한 관세 부담을 부

과함을 알 수 있다.

상무부가 비시장경제국 수출자들이 모두 정부 통제 하에 있다고 가정하고,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수출자에게 별도율을 부과하지 않는 관행은 미국 국제무역법원 및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어 왔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무부가 반덤핑 법규 해석 및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고안함에 있어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고 주지하며, 비시장경제국 수출자들이 모두 '국가적 통제'를 받고 있다는 가정이나 수출자들에게 정부 통제의 부재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 모두 상무부의 권한 내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sup>13)</sup>. 특히, 상무부의 비시장경제 단일률 가정 관련하여 국제무역법원에 제소된 사안 중

13) See, for example, *Sigma Corp. v. United States*, 117 F.3d 1401, 1405 (CAFC 1997); *Changzhou Hafd Flooring Co. v. United States*, 848 F.3d 1006, 1009 (Fed. Cir. 2017); *Michaels Stores, Inc. v. United States*, 766 F.3d 1388, 1390 (Fed. Cir. 2014); *Changzhou Wujin Fine Chem. Factory Co. v. United States*, 701 F.3d 1367, 1370 (Fed. Cir. 2012).

하나로, 비시장경제 단일체로 간주된 수출자가 조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에 의거한 단일률을 부과 받는 경우의 문제점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 때에도 국제무역법원 및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수출자가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 비시장경제 단일체의 일부로 간주되는 규정적 틀 내에서 비시장경제 단일률을 부과 받는 것은 국내법 상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sup>14)</sup>.

### Ⅲ. WTO 반덤핑협정 상 비시장경제 규정과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 1. GATT/WTO 반덤핑규범 상 비시장경제 규정의 발전

GATT/WTO 반덤핑규범에서 ‘비시장경제’ 관련 최초의 규정은 1955년 성안된 부속서 I ‘주석 및 보충 규정’ 중 GATT 제6조1항에 대한 해석각주(interpretative note)이다. 1948년 GATT 체제가 확립될 당시에는 반덤핑 조항 내 시장경제 또는 비시장경제의 구분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점차 소련연합체제의 사회주의국가와의 무역이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별도의 덤핑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1954년 GATT 1947 조항을 심의하는 제9차 작업반 회의에서 체코슬로바키아는 “내수가격이 시장에서 공정경쟁의 결과로 확립되지 않고 국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수출국의 내수가격과 수출가격간의 비교가 불가능한 어려움”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GATT 제6조1항(b)호는 통상적 상거래에 있는 비교 가능한 내수 판매가격이 없을 경우 조사대상국의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생산비용에 판매비용 및 이윤을 가산한 구성가격을 수출가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체코슬로바키아는 이 규정을 수정하여 “내수 시장가격이 국가에 의해 고정된 경우”에도 제3국 또는 구성가격 허용할 것

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 사용에 우선하여 수입국으로의 제3국 수출 가운데 통상적 상거래에 있는 비교 가능한 평균가격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sup>15)</sup>.

‘비시장경제’에 대한 고려는 추후 GATT 제6조1항을 직접 개정하기보다는 제6조1항에 대한 해석 각주 형태로 반영되었다. 각주에 의하면 “자신의 무역을 완전하게 또는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독점하고, 또한 모든 국내가격이 국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덤핑 판정 목적 상 가격 비교가능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 이 때 수입 계약 당사자는 “동 국가에서의 국내가격과의 엄격한 비교가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시장경제적 요소를 만족하는 국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 수출가격과 비교될 내수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입국에 광범위한 판단 재량을 열어놓고 있다.

1960년 중반 케네디라운드에는 복수간협정인 반덤핑협정(Anti-Dumping Code)를 추가하여 기존 GATT 제6조에 대한 구체적 해석기준을 마련한다. 반덤핑협정 제2조(g)항은 덤핑의 판정을 규율하는 제2조가 GATT 부속서 I의 제6조1항에 대한 보충 규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기존에 ‘국내가격이 국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일반적 가격 비교 방식으로부터의 예외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후 1979년 도쿄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성립된 반덤핑협정 역시 GATT 제6조의 구체적 해석기준은 케네디라운드 당시보다 강화되었으나, 비시장경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는 아니하다. 흥미로운 점은, 도쿄라운드 보조금협정(Subsidies Code) 제15조 ‘특별 상황(special situations)’에서 소위 ‘비시장경제’ 국가의 덤핑 또는 보조금 판정에 필요한 가격 비교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시장경제’ 국가의

14) Diamond Sawblades Manufacturer v. United States, No. 14-1367 (Fed. Cir. 2014).

15) GATT, Review Working Party II on Tariffs, Schedules and Customs Administration - Article VI - Proposals by the Czechoslovak Delegation - Revision, W.9/86/Rev.1 (1954.12.21.)

덤핑 판정 문제를 반덤핑협정이 아닌 보조금협정에서 다룬 것은 추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상 그룹이 협상 안건을 준비하면서 “정부 간섭과 같은 무역 왜곡을 제거한다는 궁극적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GATT 제6조 하의 일방적 권리보다는 제16조 하의 규정 보안을 통해 규율함이 바람직하다<sup>16)</sup>”고 밝힌 협상 목표와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도쿄라운드의 보조금협정 제15조 2항은 부속서 I GATT 제6조1항에 대한 보충 규정 적용 대상인 국가로부터의 덤핑 또는 보조금을 판정함에 있어, “수출가격은 수입국이 아닌 제3국의 동종물품 판매가격 또는 제3국 동종물품의 구성가격과 비교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15조3항은 제15조2항의 가격 비교 방식이 덤핑 또는 보조금 판정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경우, 대안적으로 수입국의 비교 가능한 가격이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Kim Hye-Rim and Ahn Duk-Geun (2018)은 GATT에서 도출된 협정 어디에도 부속서 I 제6조1항에 대한 제2차 보충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를 ‘비시장경제’라고 달리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 WTO 분쟁해결기구 판결에 의하면, ‘GATT 부속서 I 제6조1항에 대한 제2차 보충 규정에 언급된 국가’가 일종의 비시장경제 국가(a certain type of NME)이고, 보조금협정 제15조 역시 비시장경제 방법론(NME methodologies)을 지칭한다고 설명한다.

WTO 체제 출범과 함께 탄생한 WTO 반덤핑협정은 제2.7조<sup>17)</sup>를 통해 도쿄라운드 당시 반덤핑협정 제2조(g)항 문언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술한 보조금협정 제15조는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삭제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루마니아 대표단은 일부 수입국의 반덤핑조사 시 GATT 부속서 I 제6조1항에 대한 제2차 보충 규정이

거의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3국 가격 적용 관행에 따른 수출자의 대응 어려움과 조사과정의 불투명성을 토로한 바 있다<sup>18)</sup>. 결과적으로 WTO 반덤핑협정은 제2.7조 및 GATT 부속서 I 제6조1항에 대한 제2차 보충 규정만을 ‘비시장경제’를 ‘시장경제’와 구분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로 두고 있고, 비시장경제국의 정상가치 산정에 있어 조사 당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남겨두고 있다.

## 2.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상 비시장경제 관련 규정

1986년 중국이 GATT에 체약국 지위 회복 신청을 한 이후 2001년 WTO에 가입하기까지 15년의 긴 협상 기간 동안 논쟁이 된 주요 사안 중 하나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 문제였다. 1999년 11월 15일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미중 간 양자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Kong(2000) 및 Moon, Jun-Jo (2001)에 의하면 당시 중국은 미국의 비시장경제국가에 관한 반덤핑 조사관행을 미국의 통상정책 중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중국에 대한 비시장경제 취급의 부적절함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미국은 그러나 중국 내 계획경제체제 잔재가 남아있고 법규 및 관행이 WTO 수준과 괴리가 있음을 주지하며 반덤핑에 관한 한, 향후 15년간 비시장경제국가로 분류하여 ‘특별반덤핑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국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양자간 합의는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에도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중국은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대해 15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하고 2001년 12월 10일 WTO에 공식 가입한다.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보조금 및 덤핑 판정 시 가격 비교가능성”은 중국산 제품

16) Uruguay Round - Group of Negotiations on Goods (GATT) - Negotiating Group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Checklist of Issues for Negotiations - Note by the Secretariat

17) Original text: This Article is without prejudice to the second Supplementary Provision to paragraph 1 of Article VI in Annex I to GATT 1994.

18) Uruguay Round - Group of Negotiations on Goods (GATT) - Negotiating Group on MTN Agreements and Arrangements - Determination of Normal Value - (In the Situations Referred to in the Second Supplementary Provision to Article VI:1 of Annex I to the General Agreement) - Communication from the Delegation of Romania, MTN.GNG/NG8/W/61, 20 December 1989.

에 대한 수입국의 반덤핑 조사 시 중국의 국내 가격과 수출가격 간의 엄격한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비교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특별 규정으로 마련하고 있다.<sup>19)</sup> 가입의정서 제15항의 도입 배경을 설명하는 중국 WTO 가입준비작업반 보고서(이하 '작업반 보고서') 제150항과 제151항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중국 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기에 있으므로 중국 내 판매가격은 시장원리에 의거한 공정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가입의정서 제15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15(a)(i)조는 중국 수출자가 조사대상물품의 제조, 판매에 관해 시장경제 조건이 적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을 경우(clearly show) 수입국은 가격의 비교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국 국내 가격 또는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가입의정서 제15(a)(ii)조에 의하면, 중국 수출자가 조사대상물품의 제조, 판매에 관해 시장경제 조건이 적용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을 경우 수입국은 중국 국내 가격 또는 비용과의 엄격한 비교에 근거하지 않은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가입의정서 제15(d)조는 제15(a)조의 종료 요건을 크게 두 가지로 특정하고 있다. 먼저 수입국의 국내법이 중국 WTO 가입일 현재 시장경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중국이 수입국의 국내법 하에서 시장경제에 부합함을 확립한 경우 중국에 대한 제15(a)조 적용은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산업이 시장경제에 부합함을 확립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에 대해 제15(a)조 적용이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제15(a)(ii)조는 중국의 WTO 가입일로부터 15년 뒤에 어떠한 경우에도(in any event) 종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가입의정서 제15(d)조가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의 자동적 만료인지, 혹은 WTO 회원국이 내국법에서 규정한 시장 경제 지위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는지 여부를 두고 학계에서는 O'Connor(2011) 및 Zhou (2017)에서 보여지듯 해석상 논란이 있어왔다. 중국은 2016년 12월 12일 미국 및 EU의 반덤핑 관련 비시장경제 관행을 WTO에 제소하였으나 현재 협의 단계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중국의 가입의정서 제15조에 관해 일부 법적 해석을 내린 바 있으나, 비시장경제 지위의 만료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아니하다.

#### IV. 반덤핑협정 상 단일률 적용에 관한 WTO 판례법 고찰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미국 반덤핑 조치 가운데 2010년 이후 단일 쟁점으로서 가장 많은 다툼의 대상이 된 조치는 비시장경제 단일률 관행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하에서는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WTO 분쟁해결 상 반덤핑규범 하에서 비시장경제 단일률 적용을 통한 별칙적 조치 부과 가능성의 법적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 1. 반덤핑협정 상 단일률 적용에 관한 WTO 판례법

###### 1) '개별' 생산자·수출자 기준 덤핑마진 산정 및 부과 원칙과의 합치성

WTO 반덤핑협정 상 덤핑마진 및 반덤핑관세는 '개별'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대해 산정되고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단일률 관행은 이러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여러 분쟁에서 그 위법성이 확인되어왔다. WTO 분쟁해결절차 상 처음으로 비시장경제 적용 문제를 다룬 EC - Fasteners (China) 분쟁에서 패널은 개별 대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시장경제국 수출자들

19) 베트남의 경우 2006년 11월 WTO 가입 당시 WTO 가입준비작업반 보고서 제255항에서 중국 가입의정서 제15조와 거의 동일한 규정을 채택한바, 본고에서 더 상술하지는 아니한다. 중국 가입의정서와의 유일한 차이는 베트남 작업반 보고서 제255(d)항에서 내수 판매가격 또는 원가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제255(a)(ii)항이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고 한 점이다.

에게 비시장경제 단일체를 부과하도록 하는 EC 반덤핑규칙 제9.5조<sup>20)</sup>가 그 자체(as such) 및 적용상(as applied) 반덤핑협정 제6.10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하였다.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6.10조 제1문의 '개별마진 산정 원칙'을 확인하며, 제6.10조 제2문에 언급된 상황, 즉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또는 제품의 유형이 너무 많아 조사대상업체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제1문의 개별마진 산정 원칙의 유일한 예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sup>21)</sup>.

EC- Fasteners (China) 패널은 비시장경제국의 수출자들과 국가가 하나의 단일체(single entity)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당국이 명목상 구별되는 하나 이상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출국 국가와 하나의 단일체를 구성한다고 결론내릴 만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자들에게 단일체를 산정 및 부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한다.<sup>22)</sup> 실로, 과거 Korea - Certain Paper 분쟁에서 패널은 제6.10조 상 여러 법인(legal entity)이 반덤핑 조사 목적 상 단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 취급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며, 법인 간의 구조적, 상업적 관계가 단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봐도 충분할 만큼 긴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일 실체

로 취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sup>23)</sup>. 하지만 EC - Fasteners에서 문제가 된 EC 반덤핑규칙 제9.5조는 서로 다른 법인 간의 구조적, 상업적 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국가가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하는 수많은 법인들의 잠재적 '모회사'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가정 및 개별 법인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임을 입증해야만 개별 덤핑마진을 산정 받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패널은 입증책임의 주체를 달리 보는 기존 패널 해석이 동 건에 수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sup>24)</sup>. 특히 패널은 반덤핑규칙 제9.5조가 법인과 국가 간 종속적 관계 자체를 기정사실로 가정하고 있고 개별 생산자가 개별 마진을 산정받기 위해 여러 추가 요건들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반덤핑협정 제6.10조 상의 개별마진 산정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소기구 역시 제6.10조 상 'shall'이라는 용어는 '강행 규정(a mandatory rule)'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shall'과 'as a rule' 두 표현의 결합이 단순한 선호(mere preference)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sup>25)</sup> 밝히며, 조사당국의 개별 덤핑마진 산정이 '의무'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반덤핑협정 제6.10조 제2문에 적시된 '샘플링'을 하는 상황이 개별 덤핑마진 산정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소기구는 패널과는 달리 제6.10조 2문 이외에 신규수출자 덤핑마진 산정에 관한 규정인 반덤핑협정 제9.5조 또한 개별 덤핑마진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임을 확인하였다.<sup>26)</sup> 상소기구 설명에 의하면, 협정 제6.10조 제1문의 'shall, as a rule' 문언은 제6.10조 제2문의 샘플

20) EC 반덤핑규칙 제9.5조는 반덤핑판례는 일반적으로 각 '공급자'별로 산정된다고 규정하면서, WTO에 가입하지 않은 비시장경제국에게는 예외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개별 공급자가 아니라 공급국 전체에 대한 단일률이 결정되며, 이 단일률이 해당 공급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에 적용되는 것이다. 단, 수출자가 특정 요건들을 충족함을 입증하면 (Individual Treatment (IT) test) 해당 수출자는 개별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 때 특정 요건이라 함은 '수출가격 및 수량, 판매조건 등이 자유롭게 결정되고',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며', '개별 수출자들이 서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정부 간섭이 반덤핑 조치의 우회 행위를 관용하지 않는지' 등의 총 다섯 가지 요건으로 구성된다. See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Iron or Steel Fasteners from China ("EC-Fasteners (China)"), WT/DS397/R and Corr.1, adopted 28 July 2011, paras. 7.87-98.

21) Panel Report, EC-Fasteners (China), para. 7.90.

22) Panel Report, EC-Fasteners (China), paras. 7.92-7.94.

23) Panel Report, Korea -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ertain Paper from Indonesia ("Korea - Certain Paper"), WT/DS312/R, adopted 28 November 2005, para. 7.161.

24) Panel Report, EC - Fasteners (China), paras. 7.93-95.

25)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Iron or Steel Fasteners from China ("EC-Fasteners (China)"), WT/DS397/AB/R, adopted 28 July 2011, paras. 316-317.

26) Appellate Body Report, EC-Fasteners (China), paras. 318-319.

링 상황하의 예외뿐만 아니라 반덤핑협정의 다른 조문에서 허용되는 예외와 충돌될 수 있는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동시에 '개별 덤핑마진 산정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sup>27)</sup> 이렇듯 개별 덤핑마진 산정 원칙의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나, 상소기구는 WTO 협정상 비시장경제국에 대해서만 개별 덤핑마진 산정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명확히 하였다.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반덤핑협정 제 6.10조의 '개별 덤핑마진 산정' 요건과 병렬적(in parallel) 맥락에서 반덤핑 제9.2조 상 '개별 덤핑관세 부과' 역시 원칙으로 확립한다. 반덤핑협정 제9.2조는 반덤핑 부과 대상인 개별 공급자를 지명하되, 공급자가 다수여서 전부를 지명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국을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sup>28)</sup> EC - Fasteners (China) 패널은 비록 제9.2조에서 '실행 불가능한(impracticable)' 경우가 무엇인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6.10조와 제9.2조 간의 병렬적 구조를 고려할 때, 제6.10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수가 너무 많아(so large) 개별 마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파악하였다. 요컨대 '개별 반덤핑관세

부과 원칙'의 예외적 상황을 생산자 또는 수출자 수가 많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비시장경제국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비시장경제국 단일률 부과를 규정하는 반덤핑규칙 제9.5조는 반덤핑협정 제9.2조 역시 위반한다는 것이다<sup>29)</sup>.

EC-Fasteners (China) 상소기구는 비시장경제국의 수출자들과 국가가 하나의 단일체(single entity)로 간주될 수 있는지 문제와 관련하여,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9.2조는 기본적으로 조사당국이 다수의 수출자에 대해 단일 수출자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이들에게 단일의 덤핑마진 산정 및 반덤핑관세 부과를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sup>30)</sup> 반덤핑협정은 '수출자의 가격행위'를 다루는바, 만약 국가가 여러 수출자들의 가격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러한 영향을 받은 수출자들은 반덤핑협정 목적 상 하나의 수출자로 간주되고 단일의 마진을 산정 및 부과 받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렇듯 상소기구는 반덤핑협정 하에서 여러 수출자가 단일의 수출자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동 분쟁대상인 EC 반덤핑규칙 제9.5조에서 개별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은 대부분 비시장경제국의 다수 수출자들이 단일 수출자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없는바, EC 반덤핑규칙 제9.5조에 근거하여 비시장경제국 수출자들에게 단일률을 부과한 것은 반덤핑협정 제9.2조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sup>31)</sup> 상소기구는 또한 WTO 협정상 비시장경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개별 취급을 받기 위해 국가와 관련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규정도 없다고 판단했으며, 중국 가입의정서 제15조는 정상가치 산정 목적상 내수 판매가격의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비시장경제국이 타 국가들과 달리 취급될 수 있을 뿐, 그 외의 측면에서 다른 취급을 허용하

27) Appellate Body Report, EC-Fasteners (China), para.320.

28) 반덤핑협정 제9.2조 원문: When an anti-dumping duty is imposed in respect of any product, such anti-dumping duty shall be collected in the appropriate amounts in each case,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on imports of such product from all sources found to be dumped and causing injury, except as to imports from those sources from which price undertakings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have been accepted. The authorities shall name the supplier or suppliers of the product concerned. If, however, several suppliers from the same country are involved, and it is impracticable to name all these suppliers, the authorities may name the supplying country concerned. If several suppliers from more than one country are involved, the authorities may name either all the suppliers involved, or, if this is impracticable, all the supplying countries involved.

29) Panel Report, EC - Fasteners (China), paras. 7.109-7.112.

30) Appellate Body Report, EC-Fasteners (China), para.376.

31) Appellate Body Report, EC-Fasteners (China), paras. 376-385.

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sup>32)</sup>.

‘비시장경제 단일물’ 가정의 반덤핑협정 제 6.10조 및 제9.2조 위반 문제는 US-Shrimp II (Vietnam) 분쟁 및 US - Anti-Dumping Methodologies (China) 분쟁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었다. 양 분쟁에서 패널은 미국 비시장경제 단일물 가정 및 부과처리에 대해 EC - Fasteners (China) 상소기구 논리를 대부분 인용하며 WTO법 위반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패널은 EC-Fasteners(China) 상소기구와 마찬가지로 조사당국이 둘 이상의 법적으로 분리된 개체를 단일 개체로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수출자들에게 단일의 덤핑마진 산정 및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나, 미국 상무부의 비시장경제 단일물 가정 및 부과 구조는 다수 수출자들간의 또는 수출자들과 중국 정부 간에 단일체로 판단할 만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조사당국의 ‘객관적, 적극적 판정 (objective, affirmative determination)’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제9.2조 위반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강조하였다.<sup>33)</sup> 다시 말해 상무부는 비시장경제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가정을 반박하고자 하는 수출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비시장경제 수출자들이 단일체라는 가정에 대해 어떠한 실제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sup>34)</sup>

## 2) 선정되지 않은 생산자·수출자에 적용되는 반덤핑관세율 산정 기준과의 합치성

US-Shrimp (Vietnam) 분쟁에서 단일물 적용 문제는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제6.8조 위반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분쟁대상조치는 미국의 베

트남산 냉동새우에 대한 제2차 및 제3차 연례 재심사에 따른 반덤핑 조치인데, 의무담변자에 대해서는 영(0) 또는 미소마진이 산정되었으며, 별도율 적용 대상인 수출자에 대해서는 4.57%, 그 외 비시장경제 단일체에 포함되는 모든 수출자에 대해서는 25.76%의 반덤핑관세가 결정되었다. 베트남은 상무부가 베트남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한 수출자에게 AFA에 기반한 비시장경제 단일체를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반덤핑협정 제 9.4조가 개별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모든 업체 - 그들이 별도율에 대한 적격성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 에 적용되어야 하는 소위 ‘기타율’을 규정하는데 반해, 상무부가 베트남 단일체(Vietnam-wide entity)에게 ‘기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반덤핑협정 9.4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sup>35)</sup>. 패널은 베트남 WTO 가입 준비작업반(이하 ‘작업반’) 보고서가 비시장경제국 수입과 관련된 반덤핑 조사에서의 WTO 반덤핑협정 적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작업반 보고서에 비추어 반덤핑협정 제9.4조를 해석하기로 결정하였다.

베트남의 WTO 가입 당시 일부 회원국들은 베트남이 완전한 시장경제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덤핑 조사 시 발생할지 모를 어려움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작업반 보고서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덤핑마진 산정 시 정상가치 산정 목적 상 수출국 내수가격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sup>36)</sup>. 한편 반덤핑협정 제9.4조는 제6.10조 제

32) Appellate Body Report, EC-Fasteners (China), para. 290.

33) Panel Report, United States - Certain Methodologies and Their Application to Anti-Dumping Proceedings Involving China (“US - Anti-Dumping Methodologies (China)”), WT/DS471/R and Add.1, adopted 22 May 2017, paras. 7.361-7.364.

34) Panel Report,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Shrimp from Viet Nam (“US - Shrimp II (Vietnam)”), WT/DS429/R and Add.1, adopted 22 April 2015, para.7.156.

35) Panel Report,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Shrimp from Viet Nam (“US - Shrimp (Vietnam)”), WT/DS404/R, adopted 2 September 2011, para. 7.231.

36) WTO가입준비작업반 보고서 제254조 및 제255조 원문:

254. Several Members noted that Viet Nam was continuing the process of transition towards a full market economy. Those Members noted that under those circumstances, in the case of imports of Vietnamese origin into a WTO Member, special difficulties could exist in determining cost and price comparability in the context of anti-dumping investigations and countervailing duty

2문에 따라 개별 조사가 제한된 경우, 즉 샘플링을 할 경우에 선정되지 않은 수출자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의 상한선을 규정한다. 다시 말해, 선정되지 않은 수출자에게 부과될 반덤핑관세율, 즉 '기타율(all others rate)'은 영 또는 미소마진, 또는 이용 가능한 사실에 의거한 률을 제외한 개별 덤핑마진의 가중평균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9.4조는 기타율 적용을 위해 충족해야 할 별도의 요건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

investigations. Those Members stated that in such cases, the importing WTO Member might find it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that a strict comparison with domestic costs and prices in Viet Nam might not always be appropriate.

255. The representative of Viet Nam confirmed that, upon accession, the following would apply – Article VI of the GATT 1994,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nti-Dumping Agreement") and the SCM Agreement shall apply in proceedings involving exports from Viet Nam into a WTO Member 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 (a) In determining price comparability under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d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 importing WTO Member shall use either Vietnamese prices or costs for the industry under investigation or a methodology that is not based on a strict comparison with domestic prices or costs in Viet Nam based on the following rules:
- (i) If the producers under investigation can clearly show 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 prevail in the industry producing the like product with regard to the manufacture, production and sale of that product, the importing WTO Member shall use Vietnamese prices or costs for the industry under investigation in determining price comparability;
- (ii) The importing WTO Member may use a methodology that is not based on a strict comparison with domestic prices or costs in Viet Nam if the producers under investigation cannot clearly show 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 prevail in the industry producing the like product with regard to manufacture, production and sale of that product.

다. 패널은 베트남의 WTO 가입의정서 및 작업반 보고서 내용에 비추어 제9.4조 조문을 해석 하였으나, 이들로부터 제9.4조를 포함한 반덤핑협정의 어떤 조항에 대해서도 비시장경제국 수입 관련 반덤핑조사에 수반될 어떤 특별한 어려움을 반영하도록 수정 해석 또는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패널은 가입의정서 어디에도 '기타율'이 반덤핑협정 제9.4조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작업반 보고서 제 255조에서 조사대상물품 생산자가 "동종물품 산업의 시장경제 조건 충족을 명백히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방식의 변경이 허용되지만, 그러한 변경은 '가격의 비교가능성(price comparability)' 측면에서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37)</sup> 패널은 작업반 보고서가 반덤핑협정 제2조에서 요구하는 정상가치 산정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반덤핑협정 제9.4조를 포함한 다른 조항의 해석 또는 적용이 달리 변경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상무부가 베트남 단일체에 '기타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반덤핑협정 제9.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하였다.<sup>38)</sup>

비시장경제단일체에게 이용가능 사실에 의거한 덤핑 마진 적용 방식이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 II 위반인지 문제와 관련하여, 패널은 상무부의 비시장경제 수출국 반덤핑 조사 방식 상 별도율을 받을 적격성이 없는 수출자들의 경우 그들의 '협조' 또는 '비협조' 여부를 떠나 의무답변자로 선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패널은 의무답변자 선정 목적 상 수출자들에게 요청하는 물량 및 금액 정보(Quantity and Value Questionnaire, Q&V질의서)를 반덤핑협정 제6.8조 상 '필요한' 정보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은 사실이 반덤핑 제6.8조 하의 '이용가능한 사실' 적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sup>39)</sup>

37) Panel Report, US – Shrimp (Vietnam), para. 7.251.

38) Panel Report, US – Shrimp (Vietnam), para. 7.254.

39) Panel Report, US – Shrimp (Vietnam), paras. 7.274-7.281.

## 2. WTO 분쟁해결기구 판결에 관한 소고

제IV.1장의 WTO 분쟁 판례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비시장경제 단일률 가정 및 부과 조치의 WTO 협정 위반성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제9.2조는 덤핑마진 및 반덤핑 관세가 '개별' 수출자에 대해 산정되고 부과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에서 별도로 '개별' 산정 원칙의 예외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한 이 원칙은 반덤핑협정을 통틀어 유효한데, '비시장경제국'을 대상으로 이러한 원칙의 예외를 달리 허용하는 조항은 없다. 또한 미국의 조치는 '개별' 덤핑마진 산정 및 부과라는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별 수출자들이 정부통제의 부재를 입증하도록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제9.2조 위반으로 판명되었다.

둘째, 중국 가입의정서 제15조 또는 베트남 작업반 보고서 제255조는 반덤핑협정 제2조에서 요구하는 정상가치 산정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나, 이것이 반덤핑협정 상 다른 조항의 해석 또는 적용이 달리 변경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반덤핑협정 상 '정상가치 산정'을 제외한 여타의 조항 위반이 가입의정서나 작업반 보고서에 의해 허용되지는 아니한다. 비시장경제국 단일 체에게 '기타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반덤핑협정 제9.4조 위반을 구성한다.

셋째, WTO 판례법은 비시장경제국의 수출자들과 국가가 하나의 단일체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하며, 이 경우 다수의 수출자에 대해 단일의 덤핑마진 산정 및 반덤핑 관세 부과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는 수출자들과 중국 정부가 단일체로 판단될 만큼 긴밀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 적극적 판정(objective, affirmative determination)'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판정을 수반하지 않은 단일률의 반덤핑관세를 산정, 부과한 것은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9.2조 위반이다.

### 1) 비시장경제에 대한 WTO 반덤핑 규범의 한계 - 경제학적 측면

WTO 분쟁해결기구가 비시장경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치에 대해서도 반덤핑협정의 일관된 해석과 적용을 기본 의무로 상정하고 내린 판결 내용들은 다시금 반덤핑협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반면, 협정의 경제학적 의미에 건주어 볼 때 비시장경제에 대한 규율의 한계성 또한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

Viner(1923)는 국제관계에서 '덤핑'을 기본적으로 '국제적 가격차별 행위'로 정의한다. 이러한 덤핑 행위의 발생 그 자체는 여러 측면에서 경제학적 타당성을 가지나, 국제통상체제는 수출자의 약탈적 가격 행위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수입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허용한다. GATT/WTO 상 반덤핑 규범은 국제적 가격차별 행위를 어떻게 식별하고 덤핑의 크기를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실체적 요건을 발전시켜 왔으며, 그 결과가 WTO 반덤핑협정 제2조 '덤핑의 판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덤핑협정 제2조는 '덤핑'의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 즉 수출가격과 비교될 정상가치의 기초로서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런데 비시장경제국의 경우 국내 판매가격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므로 '덤핑'의 정의 자체를 구현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비시장경제국에 대해서는 '국제적 가격차별'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국제적 가격차별의 근원이 수출자의 독립적 가격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바탕으로 한 가격결정 메커니즘 때문이라면 사실상 '개별' 수출자에 대한 덤핑 인정 및 덤핑 마진 산정은 그 경제학적 타당성이 다소 결여된다. GATT 부속서 I 제VI:1조에 대한 제2차 보충규정 및 반덤핑협정 제2.7조는 소위 '비시장경제' 상황 하에서 수출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의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엄밀히 따져보면 동 조항에서 비시장경제로 지칭하고 있는 상황, 즉 "동종 상품의 거래가 완전한 혹은 실질적인 독점체제하에서 이루어지거나, 가격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개별' 수출자의 수출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의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비시장경제의 실질적 가격 메커니즘을 고려한 해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비시장경제 수출국의 의무담변자에 대해 생산요소 방법론을 적용하여 정상가치를 산정한다. 다시 말해, 의무담변자의 내수 가격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국가의 가용정보로부터 원가 요소, 판매관리비, 그리고 이윤율에 이르는 모든 단위가격을 차용하여 사용한 결과, 의무담변자들의 개별 덤핑마진은 각 담변자의 모델별 수출물량과 수출가격, 생산요소 투입량 정도의 상이성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방법론이 경제학적 개념에서의 '덤핑', 그리고 반덤핑협정에서 규율하고자 했던 국제적 가격차별 행위로서 수출자의 '개별 덤핑마진' 산정 의미를 구현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반덤핑협정은 시장경제 수출자에 대해서도 내수판매가격 대신 제3국 가격 또는 구성 가격에 근거하여 정상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 때에도 가격을 구성하는 생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 등에 있어 수출자 당사자의 제출 자료에 근거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sup>40)</sup> 비시장경제의 경우 수출자의 가격자료를 완전히 부인하는 식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요컨대, 반덤핑협정상 '개별' 수출자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과 '비시장경제' 라는 두 개념은 양립하기 어려운 각각의 고유 특성을 수반하고 있는데 반해, WTO 반덤핑 협정 및 가입의정서는 '가격 비교가능성' 측면에서의 예외성을 인정하면서 지속적 분쟁이 초래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도교라운드 협상에서 '비시장경제' 국가의 덤핑 또는 보조금 판정에 필요한 가격 비교 기준을 반덤핑협정이 아닌 보조금 협정에서 다뤘다는 사실은 일견 '비시장경제'에 대한 규율 논의의 적절한 장이 반덤핑이 아닌 보조금 분야에 있어야 할 당위성을 일견 확인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우

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상 그룹도 협상 초기에 정부 간섭과 같은 무역왜곡에 대한 규율을 GATT 제VI조하의 일방적 권리보다는 제16조 하의 규정 보완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현행 '비시장경제' 규율에 대한 반덤핑협정의 한계를 재고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 2)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실무적 이행 문제

WTO 분쟁해결기구는 앞서 살펴본 다수 사례에서 비시장경제 단일률 가정 및 적용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GATT 부속서 I 제VI:1조에 대한 보충 해석을 포함하여, 가입의정서 및 작업반 보고서는 모두 '비교가능성' 측면에 대해서만 반덤핑 협정의 예외적 해석 및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판결한다. 단, WTO 판례법은 다수의 수출자를 하나의 수출자로 판단하여 이들에게 단일률을 산정,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데, 이는 조사당국이 국가와 수출자를 하나의 개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적극적 판정'을 내리는 경우이다. 이러한 판결은 법적 측면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조사당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 미국의 단일률 적용 관행은 비시장경제국의 수출자들이 정부와 단일 개체로 간주해도 될 만큼 '긴밀한 관계(a close relationship)'에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상무부가 특정 수출자에 대한 정부통제의 부재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별도로 신청서 또는 확인서 검토를 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일부 수출자들이 정부와 단일체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별도로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수출자들에 대해서는 검토 장치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US-Anti-Dumping Methodologies (China) 패널은 '명백한 증거(positive evidence)'가 아닌 추정(presumption)을 기반으로 단일체 판단을 했으므로 협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반덤핑 조사는 상황에 따라 수출자 수가 많게는 수십, 수백

40)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여 업체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에 대해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일일이 검토하고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이다.

더욱이, EC - Fasteners (China) 상소기구는 다수의 수출자를 단일 수출자로 적절히 판단한 경우 이 단일 수출자에 대해서 개별 덤핑마진이 산정 및 부과되어야 하며, 이는 곧, 각각의 개별 수출자들의 수출가격 평균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결한다. 다시 말해 반덤핑조사에 최선을 다한 개별 수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두 포함하여 이용가능한사실에 의거한 비시장경제 단일률을 산정한 것은 반덤핑협정 제9.2조에서 말한 '각 사안별로 적절한 금액의 반덤핑관세 징수(collected in the appropriate amounts in each case)'로 볼 수 없다<sup>41)</sup>는 것인데, 이 또한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조사당국에 상당한 조사 부담을 가중시킨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비시장경제 단일률 가정 및 부과' 쟁점과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의 반복된 위반 판정에 대한 피소국의 불이행 문제이다. 2009년 5월 EC-Fasteners (China) 협의 절차가 시작되면서 EC의 비시장경제국 단일률 가정 및 부과 문제가 처음 대두되었고, 미국의 유사 조치에 대해서는 2010년 US -Shrimp (Vietnam) 분쟁을 시작으로, US-ShrimpII(Vietnam), US-Anti-Dumping Methodologies (China)에서 분쟁해결기구의 판결과 권고가 나왔으며, 그 외 동 쟁점을 다루는 두 건의 분쟁이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패널이 설치된 상황이다.<sup>42)</sup> WTO에서 비시장경제국 수출자에 대한 '단일률 가정 및 부과'의 위법성을 판결한 지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미국은 여전히 해당 조치를 시정하고 있지 않다. 사실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협상 기간 중에 이미 미국의 비시장경제 단일률 가정은 하나의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동안 이러한

관행을 허용토록 하는 입법 절차는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WTO의 핵심기능인 분쟁해결 제도는 그동안 타 국제조약이나 기구와는 달리 강력한 법적 이행력을 토대로 효과적으로 작동되어 왔는데, 현재의 상소기구 기능 마비 및 분쟁해결제도 기능의 약화는 이렇듯 WTO 협정 자체의 법적 공백, 이로 인한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미국의 비시장경제 단일률 관행을 WTO 법 위반으로 재차 판결하더라도 미국이 그 결정을 이행할 가능성은 다소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V. 결론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와 비교하여 경제력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 고유의 독특한 경제구조를 발전시켜왔다. 기존의 WTO 회원국들, 특히 중국의 WTO 가입 협상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 조건으로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측면의 시장개방 뿐만 아니라 시장 중심적 또는 시장 지향적 경제체제로의 근본적이고도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가입의정서 상 비시장경제 지위가 만료되기로 한 2016년 12월까지 15년이 경과하는 동안 중국은 서구의 정치 경제 체제와는 궤를 달리하여 왔으며, Wu(2016)는 중국이 소위 China, Inc. 또는 CCP, Inc.라고 불리는 독특한 경제체제를 공고히 했다고 주장한다<sup>43)</sup>. 사실 중국의 시장경제화 정도에 대

43) 현재의 중국 경제 구조가 어느 정도로 시장경제 형태와 닮아있는지, 혹은 GATT 반덤핑 조항에서 언급되는 국가의 독점, 가격 결정행위가 어느 정도로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 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구조는 세계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혹자는 중국의 경제구조가 '국가 지배적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주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장을 사용하는' 체제를 의미하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변형된 한 형태라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체제에 속하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베네

41) Appellate Body Report, EC-Fasteners (China), para.384.

42) United States - Measures Related to Price Comparison Methodologies (DS515);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Fish Fillets from Viet nam (DS536).

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Jung, Hye-Sun (2016)에 의하면 중국은 주요국들에 반덤핑 조사 등에서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을 펼친 결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 80여개 국가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학계에서는 중국 고유의 독특한 경제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며 중국을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Lee, Won-Suk (2020)에 의하면 중국은 지난 3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살펴보면 중국은 앞으로도 중국 고유의 독특한 경제 구조를 더욱 진화 및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이며, '비시장경제' 방법론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도 단기간에 구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 관행은 비시장경제 수출자의 실질적 덤핑 여부에 상관없이 반덤핑 제소율을 높이고, 무조건적인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가 크다. 하지만 미국의 단일률 가정 및 적용을 단순히 보호주의적 대중국 견제조치로 간주하기에는 미국이 오랫동안 비시장경제가 가지는 경제통제력과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보다 다자적 측면에서는 WTO 반덤핑협정이 비시장경제를 규율함에 있어 어떤 법적 공백이 있는지, 현재의 중국, 베트남 등의 경제구조의 실질적 운용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협정상 언급되는 '비시장경제' 개념을 재고할 필요는 없는지 등 보다 체계적인 규율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TO 분쟁해결기구는 반덤핑협정, 가입의정서 및 작업반 보고서 어디에도 비시장경제 단일률 가정 및 적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반덤핑 협정의 여러 조문을 위반함을 지속적으로 판결하여 왔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분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체제의 상이성에 기인하는 만큼 비시장경제에 관한 반덤핑 하의 규율 가능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Choi, Song-Ja (2013), "A Study on The Market Economy Status of China", *Chinese Law Review*, 19, 47-80.
- Horlick, G. N. and S. S. Shuman (1984), "Nonmarket Economy Trade and US Antidumping/Countervailing Duty Laws", *The International Lawyer*, 807-840.
- Jung, Hye-Sun (2016), *A Study on Market Economy Status for China* (Trade Brief No. 36),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 Kim, Hye-Rim and Duk-Geun Ahn (2019), "Empirical Evidence on Surrogate Country Method for Non-market Economy: US Anti-Dumping Policy Towards China", *The World Economy*, 42(8), 2452-2466.
- Kim, Kyoung-Hwa (2021), *Trade Remedy Policies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Focusing on Anti-Dumping Practices* (Trade Report Vol. 10),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

주엘라, 이란, 또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중국의 경제 구조 내에서 국가가 주된 경제활동 주체이고, 정치적 목적이 가장 상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 Kim, Seog-Min (2005), "A Study on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to China and Application of NME Provision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35, 287-308.
- Kong, Q. (2000), "China's WTO Accession: Commitment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3(4), 655-690.
- Lee, Ji-Eun (2017), "China's Nonmarket Economy Treatment and US Trade Remedy Actions", *Journal of World Trade*, 51(3), 495-516.
- Lee, Won-Suk (2020), *China's Trade Policy under the 14th Five-Year Plan* (Trade Report VOL. 12),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 Liang, W. (2002), "China's WTO Negotiation Process and Its Implica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1(33), 683-719.
- McDaniel, C. and E. Vermulst (2020), "United States—Certain Methodologies and Their Application to Anti-Dumping Proceedings Involving China: Re-litigating through the Backdoor?", *World Trade Review*, 1-10. doi:10.1017/S1474745621000173
- Moon, Jun-Jo (2001), "A Study on China's WTO Accession",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O'Connor, B. (2011), "Market-Economy Status for China Is Not Automatic", Available from, <http://voxeu.org/article/china-market-economy>
- Ryu, Ye-Ri (2016), "A Study on Expiry of Protection Period of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 Focusing on the Provision of Non-Market Economy Status", *International Trade Law*, 130, 109-131.
- Viner, J. (1923), *Dumping: A Problem in International Trade* (1st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u, M. (2016), "The China, Inc. Challenge to Global Trade Governance",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57(2), 261-324.
- Yang, Y. (2000), "China's WTO Accession; The Economics and Politics", *Journal of World Trade*, 34(4), 77-94.
- Zhou, W. (2017), "China's Litigation on Non-Market Economy Treatment at the WTO: a Preliminary Assessment", *The Chinese Journal of Comparative Law*, 5(2), 345-364.